



동작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도시계획과-104140(2015.8.21)호 도시관리국장 방침과 관련입니다.
2. 도시관리계획(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-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미개발지특별계획 해제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대지 내 공지 조성방법(침상형공지)을 쌈지형공지로 지상에 조성하여 다수의 보행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하는 사항임.

나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- 대지 내 공지 및 통로

구분	적용대상	계획내용		비고
		기정	변경	
쌈지형공지	• 보행통로 및 가각부	8개소	9개소	
침상형공지	• 지하철 출입구 부분	1개소	0개소	

붙임 1. 고시문(안) 1부.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 및 경미한 변경)도 2부. 끝.

